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5.12.2)으로 법 제7조의3 신설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협약 체결 절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협약 내용) 협약 대상 업종·품목, 구체적 이행 사항, 유효기간, 이행실적 평가,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명시
- (협약 체결) 협약서 날인, 동반위 제출 서류, 협약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
- (협약 효력) 협약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대기업등의 불이행 사유로 협약이 지속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효력 종료

다. 이행실적 평가 (안 제6조, 제7조)

- (협약종료 확인) 소상공인이 대기업등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 지속 불가 사실 확인을 위해 동반위에 이행실적 평가 요청
- (실적 평가) 평가를 위한 동반위의 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전문가 자문·의견 청취 등 근거 마련, 협약당사자의 협조의무 명시

라. 기타 (안 제8조, 제9조, 10조)

- (지원시책)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업종 영위 소상공인에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협약체결 및 이행·상생협의체 관리 등 지원
- (세부관리지침)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 지침 제정·운영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상생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johongmi@korea.kr
- 팩스 : (044) 204 - 7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전화 (044) 204 - 7932, 팩스 (044) 204 - 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